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154

발의연월일: 2022. 6. 27.

발 의 자:조수진·강대식·김상훈

김영식 · 김용판 · 배준영

유상범 • 윤상현 • 윤창현

조경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, 그 한도를 연 30 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8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5. 4%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,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자의 주

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 단서 중 "300만원"을 "4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 금 상환액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	4
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세대(이하 제5항	
에서 "세대"라 한다)의 세대주	
(세대주가 이 항, 제5항 및	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	
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	
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	
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외국인을 포함한다)로서 근로	
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	
의 주택(주거에 사용하는 오피	
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	
린 토지를 포함하며, 그 딸린	
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	
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	
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	
오피스텔은 제외한다)을 임차	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

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
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
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
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
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
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
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
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
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그 초과하는 금액(이하 이 항
에서 "한도초과금액"이라 한다)
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⑤ ~ ⑪ (생 략)

<u>400만원</u>
⑤ ~ ① (현행과 같음)